

강원도내 대학원 학점교환제 운영규정

제정 1995. 3. 1
2차 개정 2002. 3.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도내 대학교 대학원간의 학점교환제 실시에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시대학원) 학점교환제 실시 대학원은 강릉대학교, 강원대학교, 관동대학교, 상지대학교, 한림대학교의 대학원으로 한다.

제3조(수강과목) ① 대학원 학생은 학점교환제 실시대학원간에 합의된 교과목(이하 “교환과목”이라 한다)을 타 대학원에서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교환과목은 원칙적으로 전임교수의 담당과목으로 한다.

제4조(취득학점) ① 교환과목 학점은 학기당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재학기간 중 석사과정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② 교환학점은 소속대학원의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에 포함된다.

제5조(수강신청) 교환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수강신청서를 소속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강신청의 변경) 교환과목 수강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학기초 3주일 이내에 수강신청변경원을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성적의 적용) 교환과목으로 취득한 성적의 적용(환산)은 소속대학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교과구분의 적용) 교환과목으로 취득한 과목의 교과구분 적용은 소속대학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교환과목의 표시) 학적부(성적표)에는 교환과목으로 취득한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제10조(도서관의 이용) 교환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수강학기 중 교환과목 개설대학원이 속하는 대학교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운영) 삭제 (2002.3.29)

제12조(학칙의 준수) 타 대학원에서 수강하는 학생은 수강대학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학칙의 준용) 본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각 대학원의 학칙을 준용한다.

부칙 (1995.3.1)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3.27)

이 규정은 1998년 3월 27일 도내 5개 대학간 대학원장협의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1998.3.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3. 29)

이 규정은 2002년 3월 29일 도내 5개 대학간 대학원장협의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200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